



# 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불법찬조금 근절

교무기획부

## 1 청탁금지법의 이해

- ▶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약칭: 청탁금지법)」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.

### ◆ 적용대상자

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① 공직자 등(유치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,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), ② 공직자 등의 배우자, ③ 각종 위원회(학교운영위원회, 학교폭력 전담기구 등)의 학부모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, ④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제공한 일반 국민입니다.

### ◆ 주요내용

(부정청탁 금지)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도록 부정한 청탁\*을 할 수 없습니다. \*예) 각급 학교의 입학·성적·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·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
(금품등 수수 금지)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. 특히,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(학부모)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, 사교·의례·부조의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 일체의 음식물·선물·경조사비 제공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.

(벌칙 등) ①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②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에게 벌칙(징역 또는 벌금),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.

### ◆ 위반사례

- 스승의 날에 학생(학부모)이 선생님(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)께 선물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-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(학부모)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학부모님이 선생님과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·교감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

### ◆ 허용사례

-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(카드)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,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(꽃)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입니다.
- 학생들이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금품등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.
-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, 상급 학교로 진학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학교의 선생님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이 허용됩니다.(동생이 이전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불가능)

### [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]

- 국민신문고 : [www.epeople.go.kr](http://www.epeople.go.kr) (민원신청) 또는 청렴포털 : [www.clean.go.kr](http://www.clean.go.kr) (신고하기)
-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: [www.jbe.go.kr](http://www.jbe.go.kr) → 민원·신고센터 → 신고센터

- ▶ 우리학교에서는 적법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불법찬조금도 받지 않습니다.  
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찬조금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2 불법찬조금이란?

‘불법찬조금’이란, 「초.중등교육법」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,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청소년단체·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)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뜻합니다.

## 3 불법찬조금 유형 및 사례

-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발표회, 체육대회, 수학여행, 현장학습, 입학·졸업식 등 각종 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
-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약간자율 학습지도, 교직원 선물, 교직원 회식 등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
- 학생간부 어머니 또는 어머니회(자모회 등)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·교구 확충, 교실물품 구입,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사례
- 스승의 날, 소풍, 운동회,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경비를 부담하는 사례
-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차량운영비,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·집행 (지도자 인건비, 수당 등 교직원 관련 비용은 조성 불가)
- 학부모회에서 일인당 회비를 모금하여 찬조금을 조성하였고, 이를 별도계좌로 관리하면서 학생 도시락 및 간식을 제공한 사례
- 학교(학교장)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,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
-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, 학부모회장 개인명의 별도계좌에 모금하였으며, 학부모회장이 직접 지급 또는 입금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집행한 사례
-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